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2017 - 077 호

2017. 1. 26.

사 건 번 호 2016부사0992

사 건 명 더맛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더맛코리아 주식회사 울산 남구 처용로 2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2016. 12. 9.

주 문

-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월 매출액 및 재료비 등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으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27,721,730원을 ○○○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가맹희망자가 정보공 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등 가맹계약서상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 기 의심인 더맛코리아 주식회사¹⁾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단월 당김밥'을 사용하여 김밥 등 외식업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²⁾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영업표지	매출액3)	가맹점 수
더맛코리아(주)	000	2015. 2. 25.	단월당김밥	158	3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2015년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4)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910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844개, 가맹점수는 208,104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¹⁾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2) 2016. 3. 29.} 법률 제14135호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³⁾ 가맹본부가 설립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 때 부터 2015. 12월말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 으로 하였다.

⁴⁾ 이하 '위원회'라 한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맹본부 수	2,405	2,678	2,973	3,482	3,910
브랜드 수	2,947	3,311	3,691	4,288	4,844
가맹점 수	170,926	176,788	190,730	194,199	208,104
직영점 수	10,155	11,326	12,619	12,869	15,459

※ 출처: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 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허위 • 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되심인은 2015. 6월말 경 울산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맹희망자인 〇〇〇에게 <표 3>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자료에는 매장면적 10평 기준으로 일 매출액이 1,000천 원 내지 1,800천 원까지, 재료비는 각 예상매출액의 38%로 기재되어 있다.5)

<표 3> <u>단월당 수익분석 자료(10평 기준)</u>

(단위: 원)

⁵⁾ 피심인은 2015. 6. 29. 〇〇〇과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3. 〇〇〇 으로부터 가맹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2015. 7. 7. 가맹점의 대표를 〇〇〇외 1인(공동대표, 부녀관계임)으로 수정하였다.

구 분		금 액			
매출 -	일매출	1,000,000	1,500,000	1,800,000	
	월매출	30,000,000	45,000,000	54,000,000	
고정지출	인건비	4,000,000	6,400,000	7,500,000	
	월임차료	1,000,000	1,500,000	2,000,000	
	가스, 전기	900,000	1,500,000	1,500,000	
	재료(38%)	11,400,000	17,100,000	20,520,000	
	공과비	200,000	500,000	500,000	
	기타	0	0		
매출영업이익		12,500,000	18,000,000	21,990,000	

※ 출처: ○○○ 제출자료

-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수익분석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6)) 및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7)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 2. (생략)
- ② (생략)
-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⁶⁾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으로 기재한다.

^{7) 2016. 3. 29.} 법률 제14135호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④ (생략)

나) 적용요건

- 7 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⁸⁾.
- 8 따라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에 해당하여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 피심인이 가맹계약 상담과정에서 가맹희망자 ○○○에게 수익분석표를 통해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해당 정보는 ① 구체적인 상권분석이나시장분석,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타 가맹본부 가맹안내서의 매출액을 단순 참고한 것이라는 점(소갑 제8호증), ② 매출액 중 재료비 비중은 피심인이 자신의 가맹점인 ○○・△△・□□점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구두로 전해들은 것으로서 객관적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이들 3개 가맹점의 데이터 표본만으로 이사건 가맹점의 매출액 중 재료비 비중을 예상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므로 예상수익 등이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이 결여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⁸⁾ 대법원 2013. 1. 24. 2013두22560 판결 및 서울 고등법원 2012. 8. 23. 2012누8764 판결 참조

4) 소결

10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피심인은 2015. 6. 29. ○○○과 이 사건 단월당 ○○○점9)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15. 7. 3. ~ 2015. 7. 13. 기간 동안 ○○○으로부터 가맹점 개설 관련하여 3회에 걸쳐 총 69,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중 41,278,270원을 아래 <표 4>와 같이○○○점 개설을 위한 내부인테리어 공사비 및 주방집기 등의 구입비용으로 지출하였다.

<丑 4>

피심인의 가맹개설비 지출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업체명	금 액	내 용
인테리어공사	$\triangle \triangle \triangle$	34,100,000	설비, 금속, 목공사, 도장 등 내부 인테리어 일체
주방집기 • 비품 등		7,178,270	소독기(1), 냉장고(1), 밥솥(1), 조리대, 의자 (23), 테이블(14) 후라이팬, 냄비, 그릇 등
합계		41,278,270	

^{*} 괄호는 해당 비품의 개수임

12 한편, 가맹점사업자 ○○○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15. 10. 13.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사유로 피심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⁹⁾ 이하 '○○○점'이라 한다.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가맹개설비용 입금증(소갑 제5호증), △△△공사업체의 '공사대금 확인서'(소갑 제6호증), □□□의 주방집기등 '거래내역서'(소갑 제7호증), 가맹금 반환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소갑 제9호증) 및 피해보상금 합의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제6호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 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마. (생략)

법 시행령¹⁰⁾ 제3조(가맹금의 정의)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3. (생략)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 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10)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8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법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 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2. (생략)

- 3.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적용요건

- 14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 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 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가맹본부가 반환요 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5 또한,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 16 ① 피심인이 ○○○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매출액, 재료비 등 예상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은 통상 가맹본부인 피심인 이 독점하고 있어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희망자로서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장래의 수익을 예상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가맹점 매출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정보공개서가 제공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가 가맹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으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에게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7 가맹금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①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에게 계약 체결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 가맹점의 장래 수익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점, ② 피심인의 책임하에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자 및 공사 지연이 발생하는 등 피심인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점사업자 ○○○이 이 사건 가맹사업을 영위하기도 전에 가맹계약이 해지된 점(소갑 제10호증 및 제11호증), ③ 피심인이 △△△와 □□□를 통해 진행하였던 ○○○점 인테리어 공사 및 주방집기·비품 준비 외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위해 필요한 영업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을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로부터 수령한 급전 중 △△△와 □□□에게 지급한 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가맹금에 해당하는 27.721.730원11)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5) 소결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에게 반환해야 하는 가맹금은 27,721,730원이다.

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행위

¹¹⁾ 위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6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심인은 인테리어공사 대금 34,100,000원과 주방집기·비품등 구입비용 7,178,270원을 △△△와 □□□에게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금'은 ○○○이 ○○○점 운영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한 69,000,000원 중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한 41,278,270원을 제한 '27,721,73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근거

피심인은 2015. 6. 29. ○○○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법 제11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가맹계약 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필수 기재사항 중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 목을 누락하였다.

<표 5>

가맹계약서 법정 기재사항 누락 내역

누락 항목	비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한 다는 사항	비 케11고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 제2항 제10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 항	법 제 11조 제2항 제11호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 2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 하여 확인된다.
 -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① (생략)
-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동안 예 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 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④ (생략)

법 시행령 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 관한 사항)

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다른 조치 사항
-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으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에 관한 사항
-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 21 피심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기재 사항을 누락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소결

22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의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이 ○○○에게 반환 하지 아니한 가맹금 27,721,730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7년 1월 26일

의 장 위 원 신 동 권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이 한 주